

제2557호
2017. 12. 2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404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405호: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406호: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12
제1407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1408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56
제1409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66
제1410호: 불합리한 차등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94
제141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 훈 령

제165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짜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50
----------------------------------	-----

● 고 시

제2017-12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159
제2017-12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60
제2017-125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고시	161

● 공 고

제2017-894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162
----------------------------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4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취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장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재정국) ①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시장경제과, 취업지원과, 세무1과 및 세무2과 를 둔다.		제6조(기획재정국) ①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시장경제과, <u>일자리경제과</u> , 세무1과 및 세무2과 를 둔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일자리 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
- 나. 새정부 일자리 창출 기능 수행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조직운용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제6조 :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의 부서명칭 변경
 - “취업지원과” → “일자리경제과”
- 나. 조례안 부칙 제2조 : 부서간 업무 변동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제2항 중 “시장경제과장” →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5호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5조~제19조)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 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장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u> <u>제15조(대상 건축물) ① 구청장은</u> <u>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u> <u>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u> <u>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u> <u>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u> <u>공장, 의료기관, 군사시설, 종교시</u> <u>설은 제외할 수 있다.</u> <u>1. ~ 2. (생략)</u> <u>②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u>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u> <u>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u> <u>니한다.</u> <u>1. ~ 7.(생략)</u> <u>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u> <u>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u> <u>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u> <u>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u> <u>한다.</u> <u>제16조(온도관리기준) 관리대상 건물</u> <u>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u> <u>“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u> <u>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 2. (생략)</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17조(점검방법)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u>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는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 규정 삭제

: 제5장(제15조~19조) 삭제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 상위법 「에너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앴.

나.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 추가 : 제26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 정비
-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
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6호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자치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

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범죄예방진단팀CPO)를 참석시켜야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 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고 필요시 범죄예방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가 지원 되도록 노력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규정
- 나. 조례 기본방향 규정
- 다. 구청작의 책무
-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
-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및 사업
- 바. 위원회 구성·운영
- 사. 협력체계 구축
- 아. 홍보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7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를 말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1조로 한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3조로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광고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법. 영 및 시조례”를 “법령 및 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 등”을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15조제4호(중전의 제14조제4호) 중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 조례 제12조제3항”을 “시 조례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9조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40조제1항”을 “영 제40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10월말까지”를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로, “다음 연도”를 “당해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 같은 조를 제23조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12월말까지”를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조제5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2조제2항제3호”를 “제23조제2항제3호”로 하여 같은 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25조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9만원
- 3.6㎡ 이상 4.0㎡ 이하	69만원
- 4.1㎡ 이상 4.5㎡ 이하	85만원
- 4.6㎡ 이상 5.0㎡ 미만	99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9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9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9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9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의 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49만원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59만원

- 7.1㎡ 이상 8.0㎡ 이하	69만원
- 8.1㎡ 이상 9.0㎡ 이하	7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89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99만원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11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3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5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79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199만원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219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39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49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69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89만원
5) 연면적 50㎡ 이상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4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 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200만원
- 연면적 11㎡ 이상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9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 위	기 준	수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 벽면 이용 간판		개 m ²	.6제곱미터이하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1,500
나. 건물 4층이상의 벽면이용간판		개 개 개 m ²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20,000 40,000 4,000
2. 돌출간판		개 개 개 m ²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0,000 20,000 30,000 2,000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5,000
나. 내용변경				
4. 옥상간판		개 개 개 m ²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 100,000 200,000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개 개 m ² m ²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10,000 20,000 2,000 4,000
5-2. 입간판		개 m ²	1.2제곱미터이하	4,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 위	기 준	수수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지주이용광고물에 준함 .옥상광고물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m ²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개이하 .20개초과 매20개까지 가산	3,000 1,000 15,000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 항공기	대 대 m ²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m ² 개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4. 벽보	매	.20매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5. 전단	매	.매1,000매까지	10,000
16. 전자게시대		.지주이용간판 수수료의 2배를 적용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5,000
18.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자치구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5. 기타 광고물		· 깃발이용광고물 :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 기타종류의 광고물 :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 수수료의 계산방법

(1)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이하는절

사)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에는 계산된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3)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4)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6)연립광고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1을 경감한다.

(7)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수수료(제25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 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4층이상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 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22,000
		개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5,000
		m ²	.연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개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15,000
		개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2,000
		m ²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15,000
		개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2,000
		m ²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개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22,000
		개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45,000
		m ²	.연면적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5. 기타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1)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에 산정방법은 별표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4만원		
- 0.6㎡ 이상 0.8㎡ 이하				24만원		
- 0.9㎡ 이상 1.0㎡ 미만				3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4만원		
- 1.4㎡ 이상 1.6㎡ 이하				54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8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1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0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9만원		
- 1.4㎡ 이상 1.6㎡ 이하				39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9만원
- 2.4㎡ 이상 2.6㎡ 이하	69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4만원
- 3.8㎡ 이상 4.4㎡ 이하	28만원
- 4.5㎡ 이상 5.0㎡ 미만	34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8.0㎡ 이하	69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9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7천원
- 21장 이상		장당 3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20조제1항 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u>	<u>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생략) 1. (생략) <신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
---	--

2. (생략)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③ (생략)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생략) 1. ~ 2. (생략) 3. <u>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u>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 6. (생략) <신설>	<u>나 디지털광고물</u> 3.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u>거나 디지털광고물과</u>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u>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u>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u>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u>
--	--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2. (생략)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자율관리협정)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	--

<u>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u>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u> 2. (생 략) 3. <u>주민협약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4. ~ 7. (생 략) ③ (생 략) ④ <u>주민협약회의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 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u> 1. ~ 3. (생 략)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u>제9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u>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u> 2. (현행과 같음) 3. -----을 선출할 때에는 <u>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u>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u>제8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5. (생 략) <u>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u> ① 구청장은 <u>제9조에</u>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u>광고업자</u>에 대해서는 <u>우수광고업자</u>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u>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u> ① ~ ③ (생 략) 1. ~ 3. (생 략) <u>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u>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u>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2. <u>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관련분야</u>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u>제9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5. (현행과 같음) <u>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u> ① 구청장은 <u>제10조에</u>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u>광고사업자</u>에 대해서는 <u>우수광고사업자</u>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u>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u>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u>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u>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2. <u>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u>
---	---

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광고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신 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

<신 설> <신 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 략)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3. (생 략)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거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② (생 략) 1.~ 2. (생 략)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	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1. 법령 미 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

<u>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⑤ (생 략)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u>중구 시설 관리공단</u> 5. (생 략)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u>시 조례 제12조제3항</u>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서울특별시 중구 시설 관리공단</u> 5. (현행과 같음) 제16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u>시 조례 제12조</u>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u><신 설></u>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1. ~ 4. (생 략) ③ ~ ④ (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같다. 1. <u>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대장</u> 2. <u>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u> 3. <u>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u> <u>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u>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u>매년 10월말까지</u>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u>다음 연도의</u>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생략) 1. ~ 4. (생략) <u>제23조(교육의 위탁 등)</u>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u>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u>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u>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u>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u>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u>교육실시 3개월전까지</u>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u>당해 연도의</u>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제24조(교육의 위탁 등)</u> ① 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u>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u>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옥외광고업</u>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u>제22조제2항</u>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u>12월말까지</u>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u>제22조제5항</u>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u>제22조제2항제3호</u>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u>제24조(수수료)</u> ① (생략) 1. ~ 2. (생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u>옥외광고업</u>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옥외광고사업</u>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u>제23조제2항</u>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u>교육실시 3개월전까지</u>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u>제23조제5항</u>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u>제23조제2항제3호</u>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u>제25조(수수료)</u>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u>옥외광고사업</u>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	---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 ③ (생 략) 1. ~ 7. (생 략) 가. ~ 나. (생 략) 8. (생 략) <u>제25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u>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 다.</u> <u>1. 과오납한 경우</u> <u>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 다.</u> <u>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 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u> ③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u>제26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조례

나. 명칭 변경

- 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 제13조)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안 제11조 ~ 안 제25조)

다. 디지털광고물 추가

- 기존 네온류, 전광류 외에 디지털광고물 추가

라. 신 설

-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안 제6조)
- 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안 제11조 제4항)
- 위험 및 불법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안 제21조)

마.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사항 정비

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8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란 구 전체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이란 도시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사업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제안서의 승인을 얻어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6. “도시디자인심의”란 디자인과 관련한 정책·조례 등과 시설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간 등의 보전·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 도시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은 주변환경 등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우수한 도시공간 등의 보전·개선과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물 등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6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제8조(도시디자인사업)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도시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도시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구민단체·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도시디자인 심의

제11조(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제1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디자인 심의절차)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도시디자인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디자인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5. 별표의 시설물(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위원회 심의)
6. 제4호 및 제5호의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은 제외
7.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도시관리국장과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 및 서면 심의에 참여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마. 가로등 바. 트렌치, 맨홀 사. 제설시설 아. 가로수 보호덮개 자. 가로 녹지대 차. 가로 화분대 카. 분수대 타. 벽천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 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기타 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 16개의 조례 구성을 5장 23개의 조례로 구성 변경

나.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변경 (도시경관 → 도시디자인) 용어 재정의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신설

다. 제2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 도시디자인이 지켜야할 원칙 신설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준용 신설

라.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 시행 근거마련
-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절차, 주민참여 지원방법 등 신설

마. 제4장 도시디자인 심의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심의신청시기, 심의절차 규정 신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

바. 제5장 도시디자인 위원회

- 위원회 7명이상 20명 이하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사무처리 간사 조정 (도시경관 담당주사 → 담당주사)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9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중부소방서장
 3. 중부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장
 4. 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7. 구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

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직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

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전,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6조(민간협력위원회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민간협력위원회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

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8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9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2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다만, 해당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

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대책본부 편성기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무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5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3조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26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

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2. 기능별 협업부서 국·소장 및 과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0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

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 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3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서울특별시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4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제3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제41조(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2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3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44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49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훈련참여기관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51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 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재난의 복구 지원

제1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제5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6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8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생활안정지원 등

제5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9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1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

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62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9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7조 및 제58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3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6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시 재난예방홍보계획에 따라 구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난유형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민들이 재난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7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재정지원)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7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부터 제 64조의 규정은 2018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확정	①	②	③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9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중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중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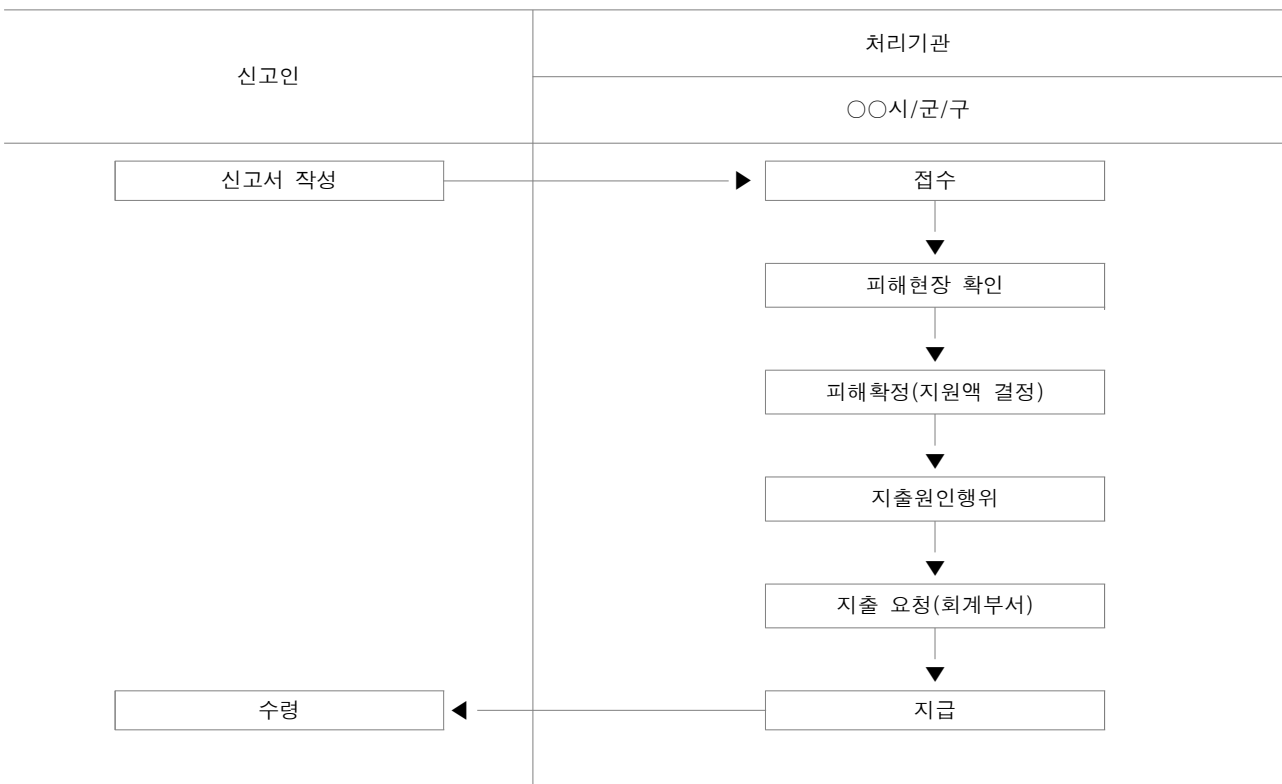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최 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보완 개정(안 제5조, 제45조)
-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내용 수정·보완(안 제6조, 제7조)
-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0조)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 ~ 제38조)
- 마.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안 제39조 ~ 제40조)
- 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55조 ~ 제64조)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1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차지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3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를 “ ”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30조 중 “통상산업부령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고, “일체의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을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지원기준”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신청자격 및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방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을 “활동지원급여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이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8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3항, 제2장 제목, 제4조의 제목,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의 제목,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의 제목,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 제14조의 제목, 제14조제1항, 제14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2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하수법」 제5조제2항”을 「지하수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별표 제4호의 금액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5”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u>구좌</u>에 입금한다. ②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u>계좌</u>에 입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생략)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u>지참</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략)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참</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u>지각</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각</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

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해당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 (생략)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8. (생략)	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해당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8.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u>」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u>농산물품질관리법</u>」 및 「<u>수산물품질관리법</u>」에 의한 품질인증품, 「<u>축산법</u>」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u>산업표준화법</u>」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u>농수산물품질관리법</u>」에 의한 품질인증품, 「<u>축산법</u>」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u>산업표준화법</u>」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 5.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안전행정부</u>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u>안전행정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안전행정부장관</u>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행정안전부</u>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행정안전부장관</u>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등) ①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u>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등) ①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u> <u>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u>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 <u>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②·③ (생략)	<u>「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특허법</u>」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써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u>지방재정법</u>」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발명진흥법</u>」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써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9조에

지체없이 구의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의장권</u>은 30만원 제30조(직무발명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u>통상산업부령</u>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 지체없이 구의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u>디자인권</u>은 30만원 제30조(직무발명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u>산업통상자원부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u>행정자치부장관</u>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u>행정안전부장관</u>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u>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생략) ⑤ (생략) 1. ~ 2. (생략) 3.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4항</u>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 11. (생략) ⑦ (생략)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 1. ~ 3.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u>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5항</u>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 11.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u>공업단지</u>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8. (생략) ② ~ ⑤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u>산업단지</u>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기업청장</u>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를 승인하거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를 승인하

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24조(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u>중소기업청장</u>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생 략) 1. (생 략) 2. <u>중소기업청장</u>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 ⑦ (생 략) 제11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중구 전통시장 또는 <u>중소기업청장</u>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④ (생 략) 제13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중구 전통시장 또는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u>중소기업청장</u>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① 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② (생략) 1.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 3. (생략) ③ (생략)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

는 재산 2. ~ 3. (생 략) ④ (생 략) 1. ~ 2. (생 략) 3.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채납액을징수한 경우 ⑤·⑥ (생 략) 제7조(지급)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는 재산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채납액을징수한 경우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당의 신청) ① (생 략)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당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비서류 중 「<u>전자정부법</u>」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이 경우 구비서류 중 「<u>전자정부법</u>」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 4. (생략) 5. “<u>활동보조서비스</u>”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생략) 제14조(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① <u>활동보조서비스</u>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u>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u>」 제4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u>활동보조서비스</u>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u>장애인복지법시행령</u>」 제35조 제1항의 <u>지원기준</u>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활동지원급여</u>”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u>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14조(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① <u>활동지원급여</u>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u>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u>」 제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u>활동지원급여</u>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u>장애인복지법시행령</u>」 제4조의 <u>신청자격 기준</u>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선정한다. ③·④ (생략) 제15조(활동보조인) ① 센터 등 <u>활동보조서비스 사업수행기관</u>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u>활동보조서비스</u>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활동보조인) ① 센터 등 <u>활동지원급여 사업수행기관</u>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u>활동지원급여</u>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u>장애인복지법</u>」 제44조제1항 및 「<u>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u>」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u>장애인복지법</u>」 제44조 및 「<u>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u>」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u>기초노령연금수급자</u>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구 관내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③ (생략)	<u>기초연금 수급자</u>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구 관내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략)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u>지득한</u>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략)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u>알게 된</u>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u>교육과학기술부장관</u>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u>교육부장관</u>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다.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u>법 제7조제2항</u>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u>법 제7조제4항</u>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u>소음·진동규제법</u>」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폐수종말·분뇨처리·축산폐수공공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u>소음·진동규제법</u>」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폐수종말·분뇨처리·축산폐수공공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및 「<u>소음·진동규제법</u>」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및 「<u>소음·진동규제법</u>」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및 「<u>소음·진동관리법</u>」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및 「<u>소음·진동관리법</u>」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u>건설기술관리</u>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u>건설기술 진</u>

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복구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4. 중대한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홍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u>건설기술관리법</u>」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u>건설기술 진흥법</u>」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u>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u>」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 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u>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u>」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3. (생략)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u>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u>」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 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u>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u>」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u>」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u>」 제9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u>최적구배</u>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⑤ (생략)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u>최적경사</u>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u>통합지휘본부</u>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2. (생략)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 5. (생략)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2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의 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③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생략)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본부의 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본부의 위치, 통합지휘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

한다.

② (생략)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

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휘본부의 위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략)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략)

②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u>통합지휘소</u> 철수) <u>통합지휘소</u>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u>통합지휘소</u>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u>통합지휘소</u>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략)	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u>통합지휘본부</u> 철수) <u>통합지휘본부</u>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u>통합지휘본부</u>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u>통합지휘본부</u>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지하수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6.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지하수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u>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도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u>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에 따라

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생략) 1. 실태조사 대상 가. (생략)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 4. (생략) ②·④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1. 실태조사 대상 가. (현행과 같음)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②·③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②·③ (생략)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4. 검사	가. 염 검사			· 수수료 면제 대상
	(1) A형	1회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 분석(검사시약·재료비)에 따른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50원 이내의 경우 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외부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민 중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따른 자1·2종, 65세이상 어르신 -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1) B형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고지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나. 주민건강검진	1회	5,000원	
	다. 밀도검사	1회	6,000원	
	라.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4. 검사	가. 염 검사			· 수수료 면제 대상
	(1) A형	1회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 분석(검사시약·재료비)에 따른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50원 이내의 경우 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외부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민 중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따른 자1·2종, 65세이상 어르신 -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1) B형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지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나. 주민건강검진	1회	5,000원	
	다. 밀도검사	1회	6,000원	
	라.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u>식품위생법시행령</u>」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 3. (생략)	「<u>식품위생법시행령</u>」 제21조 제8호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21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제5조제6호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9조의2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21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제5조제6호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9조의5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9조, 「<u>노인복지법</u>」 제2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치매관리법</u>」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용어 수정사항 등을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등

나.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수정사항 반영

- 구좌 → 계좌, 지참 → 지각 등

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등 개정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1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할재산”을 “할 재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건물 등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하며,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제1호 중 “인접”을 “연접”으로, “경쟁”을 “입찰”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입찰조건”을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고”로 하고, “취하여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바닥면적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

을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합계 × (대부 받은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합계)
2. 부지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합계 ×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다음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 중 “인접한”을 “연접한”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를 “공무원이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1급·2급”을 “1급”으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제46조에 위반한 때

제88조제3항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88조의1 및 제88조의2를 각각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하고, 제88조의3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91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u>할 재산</u>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는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u>재산에 한하여</u> 하며,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 <u>할 재산</u>-----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u>건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u> 하며, 그 부지의 <u>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u>,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 3. (생략)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④ (생략)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

1. -----
- 연접-----
입찰-----

2. · 3.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해지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

략)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행과 같음)

② ----- 바닥면적과 -----

-----.

③-----
-----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
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분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분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분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

<삭 제>

④-----

1. 건물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
면적합계 × (대부분 받은자의 건물전
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합계)

2. 부지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
면적합계 × [대부분 받은자의 건물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
당 건물의 연면적]

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 ⑦ (생략)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 다음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 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1.
6.7.)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
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
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
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구유재산

②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②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④ (생략)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 (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

②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③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제34조의2 (교환차금의 분납)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2012년 12월 31일 -----

주에게 매각하는 때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② (생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8조의1 (생략)

제88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략)

제46조(정의) -----
----- 공무원이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기 -----.

제48조(사용허가) -----
----- 1급 관사의 사용은 서울특별시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
-----.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제46조에 위반한 때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2 (현행 제88조의1과 같음)

제88조의3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매각대금 등 분납이자율에 시중변동금리를 반영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하고, 공유건물 일부대부에 따른 대부료 산출식을 단순화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별법에 의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토대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반영

-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납이자율을 고정금리에서 COFIX 변동이자율 연동 적용
-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식에 층별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 건물 총면적에서 대부 면적 간의 비율적용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대부료 감면을 보완
- 수익매각가능 건물점유기준 확대(2003년 이전 점유 → 2012년 이전 점유)

나. 불합리한 규제 정비

-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대상에 해당부지까지 포함
- 대부계약 해지규정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완화
- 은닉 공유재산 최초 신고자에 국한된 보상규정을 확대

다. 행정자치부 개정권고 반영

- 관사관리기준 개선하여 관사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

훈 령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65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점용허가 연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계가족 중 1인이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 내에서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 5회 이상이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4.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제11조 제4호 중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1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0
2. 판매대 외 제3조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명령	<u>영업정지 15일</u>	<u>허가취소</u>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명령	<u>영업정지 15일</u>	<u>허가취소</u>	
6. 판매대 종류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먹거리류, 잡화류(공산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 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10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인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8. <u>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u>	제11조				취소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함

(위반횟수 및 누적 벌점은 도로점용 허가가 갱신될 경우 연도와 관계없이 365일을 기준으로 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점용허가 연장 등의 제한)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u> <u>1.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때</u> <u>2.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u> <u>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제9조(점용허가 연장 등의 제한)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하여야 한다.</u> <u>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계가족 중 1인이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 내에서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2. 제10조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u> <u>3.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 5회 이상이거나 누적 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u> <u>4.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u> <u>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생략) <u>1. (생략)</u> <u>2. (생략)</u> <u>3. ~ 4. (생략)</u>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u>1. (현행 제2호와 같음)</u> <u>2. (현행 제5호와 같음)</u> <u>3. ~ 4. (현행과 같음)</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5. (생략) 6. ~ 8. (생략) ② (생략) <u><신설></u>	5. (현행 제1호와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u>		
제11조(점용허가 취소) (생략) 1. ~ 3. (생략) 4. <u>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u> <u><신설></u>	제11조(점용허가 취소)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u> 5. <u>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1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한다.</u>		
5. (생략) 6.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7.</u> (생 략) 별표 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별표 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위 반 행 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위 반 행 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30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30
2. 판매대 외 제3조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2. 판매대 외 제3조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6. 판매대 종류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 판매하는 행위(먹거리류, 집화류(공산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6. 판매대 종류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 판매하는 행위(먹거리류, 집화류(공산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10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10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 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 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인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	제11조				취소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인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 8.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11조				취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위조상품 판매, 대리영업 등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노점실명제 정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연장제한 기준 명시

- 제10조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 위반 시
-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총 5회 위반 시 또는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나. 판매금지 품목 판매 및 제3자 영업행위 행정처분 강화

- 허가취소 단계 1회 단축(기존 4회 ⇒ 3회)
- 단, 위조상품 등 판매금지 품목 판매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허가취소

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반복위반 시 처분기준 강화

-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2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0-10번지 외 2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97	2017.12.27.	동호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한강변의 옛 지명인 동호 지명을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2-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6	2017.12.27.	세종대로16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2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길 10	2017.12.27.	건물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25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증감율
계		427,116,089	396,090,827	31,025,262	7.83%
일반회계		376,182,303	337,993,213	38,189,090	11.30%
특별회계		50,933,786	58,097,614	△7,163,828	△12.33%
	의료급여	215,238	194,866	20,372	10.45%
	주민소득지원	1,806,130	1,590,456	215,674	13.56%
	주차장	47,904,312	56,294,186	△8,389,874	△14.90%
	기반시설	1,008,106	18,106	990,000	5467.80%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894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 월 일
중 구 청 장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2. 신청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굴착장기사업계획(‘18년~’22년)
4. 접 수 처 : 중구청(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 3396-6123~4)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중구)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18년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본 공고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 3396-61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4.10.10.>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 <http://hidig.seoul.go.kr>)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역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구간	시행부서	매설관경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비 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대책
4. 안전사고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illegible][illegible]